

■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[별표 10] <개정 2017. 10. 24.>

지진구역 및 지역계수(제61조 관련)

지진 구역	행 정 구 역		지진구역 계수
I	시	서울특별시, 부산광역시, 인천광역시, 대구광역시, 대전광역시, 광주광역시, 울산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	0.22g
	도	경기도, 강원도 남부 ^{주1)} , 충청북도, 충청남도, 전라북도, 전라남도, 경상북도, 경상남도	
II	도	강원도 북부 ^{주2)} , 제주도	0.14g
비고			
주1) 강원도 남부: 강릉시, 동해시, 삼척시, 원주시, 태백시, 영월군, 정선군			
주2) 강원도 북부: 속초시, 춘천시, 고성군, 양구군, 양양군, 인제군, 철원군, 평창군, 화천군, 홍천군, 횡성군			